

제 1 조(목적) 이 계약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㈜메쎄이상과 참가자간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

제 2 조(정의)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1. '전시회'라 함은 ㈜메쎄이상(이하 "회사"라 칭한다)이 단독 또는 제 3 자와 공동으로 주최·주관하는 행사로써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는 전시품을 출품하고,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·홍보·교육·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.
- 2. '참가자'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 '참가신청서'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업, 개인, 공공기관 및 협·단체 등을 의미하며, '참관객'이란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전시회의 부대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을 의미한다.
- 3. '전시품'이란 참가자가 홍보·판매를 목적으로 전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유·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
- 4. '참가비(출품비라고도 한다)'란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참가신청서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
- 5. '참가신청서(출품내역서를 포함한다)'라 함은 회사가 정한 방식(온라인 또는 서면)으로 참가자가 신청한 서비스 세부 내역으로써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의미한다.
- 6. '전시장'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(소유 또는 임차 등)하에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, 실내·외 및 지붕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참가자 또는 참관객이 장치기간 시작일로부터 철거기간 종료일자까지 이용하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.
- 7. '전시부스'란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·판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
- 8. '장치기간(설치기간)'이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창고 등의 공간을 설치 및 준비하는 기간, '전시기간'이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, '철거기간'은 관람기간이 종료된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의미한다.

제 3 조(전시회 및 참가자)

- ① 전시회의 명칭·기간·행사장소 등의 세부사항은 별지의 '참가신청서' 기재한다.
-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명의자, 실제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

제 4 조(전시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)

- ① 계약 체결 1: 참가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(온라인, 서면 등)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,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.
- ② 계약 체결 2: 회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가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참가자에게 출품내역서(참가신청서 확정)를 회신하고, 참가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은 체결된다.
- ③ 회사는 이메일, 문자, 전화 등의 방식으로 승인을 통지할 수 있으며,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

회사가 참가신청서 수정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참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

제 5 조(계약 변경 및 해지)

- ① 계약의 변경: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참가신청계약 세부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- ② 참가신청취소(계약의 해지): 참가자가 전시참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참가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,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)

- ① 참가비: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총액을 의미한다.
- ② 참가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(선납 원칙)

참가비 총액의 50%	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(개최일이 90일 이내로 남은 경우, 계약체결 익일까지)
참가비 총액의 100%	개최일 30일 전까지

- ③ 참가비 후납: 참가자가 전시회 종료 후 참가비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, 계약체결 시 서울보증보험 등의 "이행지급보증" 및 이에 준하는 이행증서 등(이하 이행증서 등이라고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고, 개최일 전일까지 동 이행증서 등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참가비 납부기한은 전시회 시작일로부터 90 일로 한다.
- ④ 전항의 이행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비 총액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만약 참가비의 일부를 이행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참가자가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기한 내 참가비(또는 이행증서)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참가신청취소(계약 해지)를 할 수 있으며,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회사는 참가비 완납시까지 전시품 철거(반출)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7 조(위약금)

- ① 참가자가 납부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참가자가 기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② 참가자가 참가신청취소(해지)를 하는 경우 위약금은 아래와 같다.

기한	위약금
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	총 참가비의 50%
전시회 개최 59일 전부터 30일 전까지	총 참가비의 70%
전시회 개최 29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	총 참가비의 100%

- ③ 위약금은 참가신청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즉시 이행증서 등의 실행을 통하여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다.
- ④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, 기납부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, 제6조에 정한 납부기한에 따라 미납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전시부스 배정 등)

① 회사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전시부스 등 참가자 전용공간의 위치·규모·장치물의 형 태 등을 결정하고,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세부운영규정(참가기업매뉴얼을 포함한다)을 확정하여 통지한 다.

- ② 참가자에게 전용공간이 배정 및 운영규정이 통지된 이후라도 전시회 운영상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전시부스의 규모·위치·장치물 등 세부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전항의 경우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한 회사의 운영 규정 변경을 수용하여야 하며, 회사는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전시품 출품 및 관리 등)

- ① 출품 제한: 회사는 전시품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
- 1.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 내지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(용역)
- 2.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,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(용역)
- 3. 상표권의 침해 등 법률상의 제한, 인허가의 흠결 등의 사유로 판매·홍보가 부적합한 물품(용역)
- 4. 다른 참가자와의 분쟁, 참관객 민원, 혐오유발 등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
- ② 회사는 전시기간 중 전항 각호의 사유로 참가자에게 전시품의 반출(퇴거)를 요청할 수 있고,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, 회사는 참가비 반환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- ③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에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용공간 내 전시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전 시품으로 인한 인적·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·안전·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출품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나, 회사의 고의·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 도난·분실·망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)

- ① 전시품의 하자 책임, 제조물 책임 및 참가자의 전시품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참가자가 피해자와 직접 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, 회사는 동 분쟁을 직접 해결하거나 중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②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참관객에게 제공(배포·판매·대여 등)한 물품·용역에 대하여 회사는 정산·배송·반 품·취소를 포함한 일체의 상행위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1조(전시부스 양도금지)

- ① 참가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전용공간(전부 또는 일부)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
- ② 참가자가 모회사·자회사·지사·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공간을 양도하되, 이 경우에도 관계회사 명의의 전시참가신청서(계약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명의(업체명, 브랜드 등)가 아닌 제3자의 전시품·홍보물 등을 전용공간에 비치할 경우 간접적인 전시부스 양도행위로 간주되며, 회사는 해당 물품을 반출시키거나 또는참가비의 환불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
제12조(시설물 및 안전관리)

- ① 참가자는 장치기간,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에 참가자의 전용공간 및 참가자가 점유하는 공용공간 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·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참가자는 회사 또는 전시장 대여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전시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.
- ③ 시설물의 변경·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회복이 지연되거나 복구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, 회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참가자의 시설물(장치물) 및 모든 전시품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소방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세부운영규정)

- ①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·철거, 부대시설, 음향설비, 주차, 홍보행사 등 세부운영규정은 전시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식(홈페이지, 이메일 등)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.
- ② 동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항의 '세부운영규정'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참가사는 동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참가자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전시회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 전시회 참가를 제한하거나 참가비 반환 없이 참가자의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
제14조(추가비용)

- ① 제12조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기간(장치기간, 전시기간, 철거기간 등)과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추가비용은 전시회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전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윤리규정)

- ① 참가자는 전시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동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,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, 참가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전 2개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묵인, 금품수수, 향응·편이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·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민사 및 형사상의책임을 부담한다.

제16조(정보보호)

①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, 회사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

- 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② 참가자의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, 참가자가 직접 초청한 관람객인 경우에도 전항의 정보제공동의 가 없는 한 회사는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.

제17조(분쟁해결)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회사와 참가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